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7일

2. 제안이유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과 초기 운영에 소요되는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동의
 - 출자 대상 기관 :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 출자 방식 : 현물(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건물, 토지) 및 현금 출자
 - 출자 규모 : 2,605억원(현금 20억 원, 현물 2,585억 원)

[현물 출자 내역]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산 내역	(연)면적	재산가액	비고	
계		251,121	258,421		
토지	소계	7필지	153,139	219,857	
	농산	매천동 527-3, 팔달동 50-1, 50-4	126,371	183,675	
	수산	매천동 526, 526-11, 526-12, 팔달동 1-3	26,768	36,182	
건물	소계	11개 건물	97,982	38,564	
	농산	농산A,B동, 관리동, 차상경매장A,B,C동, 쓰레기처리장, 관련상가, 서비스동	77,097	25,953	농산A동 화재 소실분 미반영
	수산	수산동, 냉동창고	20,885	12,611	

4. 검토의견

□ 제안 취지 및 근거 법령의 적정성 검토

○ 본 동의안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과 초기 운영자금을 대구시가 전액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7)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

○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8)에 지방자치

7)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하고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공사 설립과 도매시장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재산이 되는 도매시장 토지와 건물을 현물로 출자하고, 초기 공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됨.

□ 출자 동의안 제출 사전절차 이행 검토

- 대구시는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단계로 타당성 검토 용역, 주민 공청회,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등을 이행하였고, 제305회 정례회에 공사 설립을 위한 절차적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조례안 가결을 전제로 공사 설립을 위한 중요한 행정적·법적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7호9)의 예외 규정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하 생략)

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따라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현물출자를 계획하고 있는 도매시장 토지와 건물은 현재 시유 행정재산으로, 이를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나, ‘23년 10월 26일 의안 제출 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자 방법 및 출자규모의 적정성

- 출자 방법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대구시가 전액 현금 및 현물 출자할 계획으로 적정함.
- 출자 규모는 현금 20억 원, 현물 2,585억 원 등 총 2,605억원임.

▶ 현금 출자 20억 원은

공사 설립 초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시설관리 경비,

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 2.(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이하생략)

인력채용, 집기비품 구입비 등(총 10억원)과 수입·지출 간 발생 시기 불일치 및 재무 안정화를 위한 초기운영자금(1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이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는 자본금 출자계획(10억원)에 대해 공사의 3개월간 운영자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당초 현금출자는 10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최근 20억 원으로 변경¹⁰⁾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현금출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금 액
계		20.0
전산시스템 구축	통합업무시스템 구축	1.0
	홈페이지 구축	3.0
시설관리	긴급유지보수	3.0
기타	인력채용	0.9
	출범식	0.3
	간판교체 및 CI개발	0.8
	집기비품	1.0
초기운영자금(수입지출 간 발생시기 불일치 해소 및 재무 안정화)		10.0

※ 대구시(농산유통과) 제출 자료

▶ 현물 출자 2,585억 원은

-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매천동, 팔달동 일대의 행정재산인 토지 7필지(153,139㎡), 2,199억 원, 도매시장 내 건물 11건(연면적 97,982㎡), 386억원을 출자하는 것임.
- 조례에 따라 공사의 관리 대상이 되는 축산물도매시장과 한약재 도매시장 부지 및 건물의 현물출자 제외 사유는,
- 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

10) (가칭)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설립 출자 변경계획(농산유통과-27136, 2023. 10. 26.)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기본계획’ (’23. 6. 21.)에 따라 축산물도매시장 부지가 4호선 차량기지로 결정되어, 축산물도매시장 부지 및 건물을 공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차량기지 사업 추진(’25년~’30년)에 따라 이를 다시 환수하여 대구교통공사로 재출자하는 등의 행정적 번잡함이 발생하게 되고, 그 밖에 등록면허세 등 추가비용(8,000만원 정도)의 발생으로 출자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한약재도매시장의 경우,

현재 건물의 일부(1층)만을 도매시장 기능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지하 1층, 2~4층) 부분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현물출자 시 공사 사무에 적합하지 않고, 운영 관리상의 비효율이 발생함에 따라 출자 제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대구시는 공사 설립 후 축산물도매시장과 한약재도매시장의 건물, 부지 등을 공사에 관리위탁의 형태로 관리하게 할 계획인 바, 출자 후 공사 재산으로 관리하는 방법과 관리·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종합적으로 본 출자안에서 제시한 현물출자의 규모는 공사 설립 취지에 따른 사업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자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현물출자 금액으로 산정한 출자금 규모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감정평가 미이행으로 정확한 출자금액이 산정되지 않은 바, 이를 신속히 이행하여 출자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향후 도매시장이 이전하는 경우 출자한 현물의 반환에 대해서도 행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임.

□ 검토결과

- 본 출자 동의안은 대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의 설립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 및 초기 운영 경비를 출자하는 것으로, 원활한 공사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출자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
- 공사 설립 조례안의 가결을 전제로 의회 출자 동의안 심사에 필요한 제반 절차는 대부분 이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의 내용은 관계 법령의 규정 내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음.
- 다만, 출자 전환에 따라 공사의 재산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노후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많은 예산의 투입이 필요한 시설물 개선과 대수선 등의 사안 발생 시 신속한 예산 투입과 대처가 가능할지에 대해 도매시장 유통 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사 설립 타당성 평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 운영 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으로 직영 대비 연평균 7억 7천만원 정도의 수지 악화와 대구시 연평균 부담비용 31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바, 향후 공사 수익 사업 발굴과 운영의 최적화를 통해 공사의 독립채산 운영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